

제 호

방류종자인증서

1. 생 산 자(업체명):
2. 대 표 자:
3. 소 재 지:
4. 품 종 명:
5. 검사기간:
6. 검사항목:

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2항
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종자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전문기관의 장

직인